

2026년 성장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

달구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및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「2026년 성장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」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. 5. 11.

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장

1 사업개요

- (사 업 명) 2026년 성장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
- (접수기간) 2026. 5. 11.(월) ~ 2026. 6. 11.(목) 18시까지
- (서류심사 및 결과발표) 2026. 6. 15.(월) ~ 2026. 6. 17.(수)
- (발표심사 및 결과발표) 2026. 6. 22.(월) ~ 2026. 6. 24.(수)
- (협약일) 2026. 7. 1.(수) 11시 예정
- (사업기간) 2026. 5. 11.(월) ~ 2026. 10. 1.(목)
- (정산 및 결과 보고서 제출) ~ 2026. 10. 1.(목)
- (주최.주관)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
- (지원대상) 공고일 기준 대구 서구 소재 영업장(사업자등록증 기준)의 3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
 - ※ 예비 창업자는 약정일까지 대구시 서구에 사업자등록 완료 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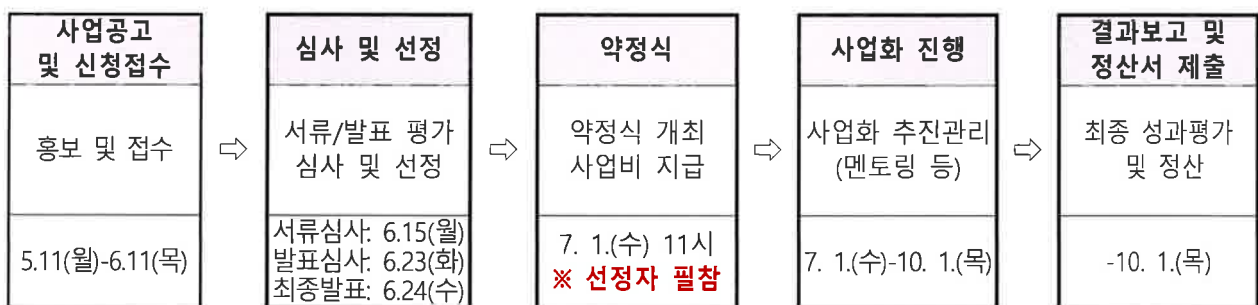
2 지원내용

- (지원규모) 63,000천원 / 총 9개사
 - (지원내용) - 사업화 지원금 : 사업계획서 발표 및 심사 평가에 의한 사업화 자금 지원 (7백만원*9명) / 자부담 10% 별도
 - 연계지원 : 여성창업 커뮤니티를 통한 창업관련 업무지원
 - 사후관리(창업보육, 교육, 멘토링, 네트워킹 등 후속지원)
- ※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기간 1년 이내 폐업할 경우 지원비용 전액 환수 조치함

- (세부사업내용) 제품 개발 비용, 홍보·마케팅 비용, 제품 인증 비용,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등으로 구성.

지원분야		세부 내용
사업화 지원	제품 개발	· 기업의 신제품 출시와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위한 제품 개발 비용 지원
	홍보·마케팅	· 신규 고객 확보와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홍보·마케팅 비용 지원
	제품 인증	·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강화를 위한 IP출원, 제품 인증 비용 지원
	기타	·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지원

3 지원절차



※ 상기 일정 및 진행방식은 운영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.

4 선정방법

- 평가방법 : 서류,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결정
- 평가점수(100점) : 서류 및 발표평가(100점)
- 평가기준 : 창업아이템의 독창성, 사업성, 실현가능성, 창업자의 전문성을 평가
 - ※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, 동점일 경우 독창성 평가점수 고득점 순 선정
- 결과안내 :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
 - ※ 서류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발표심사 일정 안내

5 유의사항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접수된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며, 사업(아이템)명, 참가분야 등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변경 불가

- 참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, 향후 참가자격 제외기준이 확인될 경우 자격박탈 및 상금 환수 등 조치 예정
-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(설명회 등)체결, 수시 및 최종, 사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□ 평가관련 유의사항

- 발표평가는 신청자(대표자) 본인이 직접 발표해야 하며,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
-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은 공개하지 않으며,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없음

□ 지식재산권 관련 유의사항

- 타인의 아이디어,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
- 신청·접수 이후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, 이를 보호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

□ 시기별 점검유형

구분	주요내용	비고(증빙/관리)
사전점검	· (예비창업자) 약정일 전 서구 관내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·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비 실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보완	- 사업자등록증 - 실행계획서
수시점검	· 협약 내용에 따른 사업화 진행률 확인(시제품 제작, 마케팅 등) ·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비 집행 및 시제품 제작 현황 등 확인	- 사업 중간보고서 - 사업비 집행내역서(영수증)
최종점검	· 최종 결과물(시제품, 홍보물 등) 확인 및 성과평가 · 지원금 정산 및 부적정 집행 비용 확인	- 최종 결과보고서 - 정산보고서
사후점검	· (폐업 여부 확인)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 서구 관내 사업자 유지 여부 확인(※최소 1회 이상 불시 방문 점검) · 기간 내 타 지역 이전 혹은 폐업 시 지원비용 전액 환수 조치	

□ 사후관리 관련 유의사항

-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 -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,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 - (폐업 여부 확인)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 서구 관내 사업자 유지 여부 확인(※최소 1회 이상 불시 방문 점검)
 - 기간 내 타 지역 이전 혹은 폐업 시 지원비용 전액 환수 조치
- ※ 미이행 시 지방보조금법에 의거한 강제징수 절차 착수

6 접수처 및 문의처

□ (접수처)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
홈페이지. <https://w-startup.daegu.go.kr/>

□ (문의처)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살맛나는 서구팀
T. 053-285-1331/ E-mail. hijob2050@naver.com

□ (제출서류)

구분	제출서류	비고
필수	[서식1]참가신청서 및 [서식2]사업계획서 1부	한 개의 PDF파일로 변환 후 제출
	[서식3]사업비 집행계획 1부	
	[서식4]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	
	[서식5]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	
	[서식6] 대표자 이력서 1부	
	[서식7-1]사업자등록사실여부(예비창업자) [서식7-2]총사업자등록내역(기창업자)	
	[서식9]개인정보 수집(이용)·제공 동의서	
	[서식10]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창업신청서	
해당시	[서식8]신청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*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모두 제출 *개인/법인사업자인 경우만 제출	
필수	발표자료(15페이지 이내)	자유양식 (PPT를 PDF로 변환하여 제출)

※ 필수제출 서류 미제출(미비)시 서류 전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.

붙임1

사업비 집행기준(보조세목 정의)

[예비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 발췌]

□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

비 목		기 준
재료비	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의 : 사업계획서상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·원료 및 데이터 등의 무형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매하고자 하는 재료가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협약기간 내에 납품 및 사용이 가능한 재료비에 한하여 집행 가능(배송비 포함)
	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금속·보석·원석 등은 원칙적으로 구매가 불가하나,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 시 필요연관성이 높고,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구매 가능 ※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매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, 주관기관에서 사업비 집행을 제한할 수 있음 ※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는 동 사업비로 집행 불가 ※ 시제품 제작에 직·간접적으로 활용되는 기구·비품 등은 기계장치비로 구매
외주용역비	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의 :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, 용역 계약을 통하여 외부 업체(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)에 의뢰·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화를 위한 시장조사, 연구용역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집행 가능 - 외주용역 대금은 과업 완료 후 일시납이 원칙.
	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외주용역 결과물이 점검 시점에 정상 구동되지 않거나, 과업범위 이하의 결과물이 도출된 경우 등 결과물 또는 과업이행 수준이 미흡함을 발견한 경우 외주용역비 집행 불가 ※ 지역 내 업체 거래를 우선 하되, 지역 내 거래 업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 가능. 단, 사업장이 없는 위탁업체는 거래 불가. ※ 주관기관은 필요 시 2,000만원 미만(공급가액 기준)의 외주용역 계약 건에 대해서도 창업아이템과 외주용역 업체의 연관성, 위탁 업체의 과업수행 역량, 적정 계약 금액·기간 등을 심의할 수 있음 ※ 당해년도 동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, 창업기업 대표자 또는 팀원이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2년 이내인 업체, 프리랜서,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·종목의 연관성이 없는 업체, 시제품과 유사 제품 제작 경험이 없는 업체, 당해년도 동일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과의 외주용역 계약 체결 및 외주용역비 집행 불가 ※ 창업기업의 귀책으로 계약 해지·해약 시 발생하는 위약금, 손해배상금 등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※ 양산을 목적으로 하는 금형의 제작 및 시제품 테스트를 위한 최소수량을 초과한 대량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 불가
특허권 / 무형자산취득비	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의 :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(산업재산권, 특허 출원 및 등록비, S/W등록 포함 저작권 등)의 출원·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창업아이템 사업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재산권, 특허, S/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·등록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집행 가능하며 협약체결 이후 출원한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선행기술조사비, 우선심사청구비 또한 집행 가능 - 출원인(최종권리권자)은 창업기업 본인(법인은 등기부등본상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일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출원)이어야 함. 단, 타인 또는 타기관 등과의 협약에 의거 공동 출원을 해야 할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은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담
	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협약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비용 집행 불가 ※ 협약 이전 출원 건에 대한 등록비용 집행 가능(단, 대리인 성공보수로 집행 불가) ※ 협약종료 이후,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) 관련 출원사실증명원 제출 필요

비 목		기 준
광고 선전 비	기 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의 :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, 홍보물 제작, 포장디자인, 포털사이트 배너광고,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- 마케팅비 집행 예시 : 홍보영상제작비, 온라인쇼핑몰 입점비, 포털사이트 배너광고, 온라인홍보비, 앱(App)스토어 등록비, 카탈로그 제작비, 일간지·신문 등 광고비 등 - 마케팅을 위해 계약,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, 외주용역비 기준, 유의사항 준용
	유의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웹 호스팅비, 도메인 등록비 등의 소요비용은 협약기간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 ※ 일회성 무작위 홍보를 위한 배포용 기념품제작(부채, 샘플화장품 등), 유니폼제작, 기프트콘 등에 소요되는 비용집행 불가 ※ 모든 광고·선전 활동은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, 협약 기간 이후 잔여금액의 발생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(온라인 광고, 문자 등 충전·차감방식 화폐)의 경우, 협약기간 내 실소요 비용 집행이 가능하다.

□ 창업기업 사업비 보조세목 정의

비목	세목	보조세목	정의
재료비	재료비	재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
외주 용역비	외주용역비	일반용역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
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일반수용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 관련 비용
광고 선전비	광고선전비	일반수용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추진하는 경우
		일반용역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

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

※ 공통(필수) :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, 거래처 통장사본

비 목	내 용
재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견적서, 검수조서(증빙사진 포함)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, 거래처 통장사본
외주용역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계약서(과업내용포함), 결과보고서, 검수조서(증빙사진 포함),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, 거래처 통장사본, 규정 확인서(필요시 이행보증보험증권(또는 각서), 외주용역 심의요청서 등
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창업기업,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출원·등록 건이 기재된 계약서 또는 견적서(변리사 위임 시), 출원사실증명원(출원한 경우), 지재권 등록증(등록한 경우), 특허청 관납료 영수증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, 거래처 통장사본 등 • 우선심사청구 : 심사청구서(우선심사신청) 접수증 • 선행기술조사 의뢰 :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 등
광고선전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, 거래처 통장사본, 계약서(과업내용 포함), 결과보고서(결과물), 검수확인서(증빙사진 포함), 홍보제작물, 규정 확인서(용역 계약 체결 시) 등